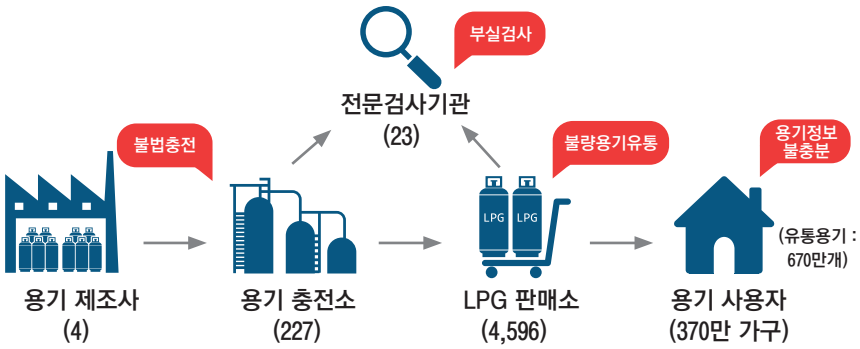
# 불량용기, LPG시장 퇴출

## LP가스 용기 유통단계별 불법행위 유형




## LP가스 용기관리, 어떻게 바뀌나

**현 재**

- 유통용기 관리체계 허술
- 용기재검사 부실
- 위반시 솜방망이 처벌
- 용기폐기 주체 불명확
- 불량용기 유통 필요시 단속

**향 후**

- ICT기술 활용, 전주기적 관리
- 검사과정 실시간 모니터링
- 강력한 행정처분(One Strike Out)
- 검사기관으로 일원화
- 상시 합동단속(경찰청 공조)

| | 개선 전 | 개선 후 |
|---|---|---|
| 용기제조 | • 국제 검사기준에 비해 국내기준이 미흡(9개 항목)<br>• 용기 시제품 제조단계에서 최초 1회만 공장검사 | • 국제수준으로 강화(압력반복시험 및 파열시험 추가, 11개 항목)<br>• 3년마다 정기적 실시 |
| 충전/판매 | • 용기 유통이력 확인 불가(용기 사용처, 공급처 및 점검이력 등)<br>• 불량용기 충전 및 유통행위 금지 규정 미비<br>• 판매소 간판 미규격화 / 배달차량 미등록 | • ICT기술 활용, 이력관리체계 구축(용기 사용처, 공급처 및 점검이력 실시간 확인)<br>• 금지행위 유형 규정 / 허가취소 등 처벌근거 신설<br>• 규격화된 간판 부착 / 차량등록 의무화 |
| 검 사 | • 부실검사(압력시험 미실시) / 위반시 1차 개선권고<br>• 검사결과 사후점검 생략 | • 압력시험 전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/ 위반시 곧바로 행정처분<br>• 정기검사제도(3년 주기) 도입 |
| 사 용 | • 인명사고 발생시 사업정지 10일 이내<br>• 용기 안전정보 제공 불충분 | • 대형 인명피해 발생, 고의 불법충전 행위시 허가취소(One Strike Out)<br>• 용기외부에 소비자 안전정보 부착(용기 사용기한, 검사여부 등) |
| 폐 기 | • 충전소, 판매소, 검사기관에서 각기 수행<br>(용기내 잔가스 안전처리, 불법 재사용 문제 발생) | • 검사기관으로 폐기주체 일원화 |